

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9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」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로서,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(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 결과 ‘적정’이었으며,
- 다. 협약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양질의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관리 및 운영
-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소요예산 : 3,547,413천원('25년) ※ 민간위탁금 2,541,693천원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※ 2025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'25.7.18.) : 적정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제1항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제5항(위탁운영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(복지정책과-14101, '23.6.21.)

○ 추진 필요성

-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신체·정신질환, 질병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 대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시설로,
- 정신질환·고령·장애인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사례관리, 심리상담, 치료재활, 복지자원 연계 등 노숙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·지원이 필요하므로
- 자활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사무

- 시설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
- 노숙인 알코올해독센터 운영
- 알코올의존·정신질환을 지닌 노숙인 재활지원
- 지원주택,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
- 탈시설·탈노숙인 지역사회 정착(취업 및 주거지원)
-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및 응급쉼터 운영
- 위탁시설의 재산관리,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설립일자 : 2004.2.1.
- 시설위치 :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
- 시설규모 : 3,372㎡(2개 동(가, 나동) 각 2층)
- 시설구성 : 생활실, 사무실, 프로그램실, 식당, 체력단련장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제1항

▶ 제15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1항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제5항(위탁운영)

▶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5항

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-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1항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자활지원과 주하영 (☎ 2133 - 7494)